



##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

[시행 2024. 7. 3.] [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109호, 2024. 7. 3., 일부개정]

전라남도 여수시(건축과), 061-659-4099

### 제2조(관리비용의 지원 및 기준)

② 여수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1. 6. 30., 2024. 7. 3.>

1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,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<개정 2024. 7. 3.>
2.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·보안등의 연간 공동전기료. 다만, 가로등·보안등의 전기 전용(專用)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, 연체료는 제외한다.<개정 2024. 7. 3.>